#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1

발의연월일: 2020. 7. 9.

발 의 자:유동수・인재근・문정복

황운하・박 정・맹성규

김회재・홍성국・고용진

이해식 · 김민철 · 이태규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최근 아동·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의 증가, 편의점·P C방 등 야간1인종사자 사업장의 증가, 주취폭력·데이트폭력 등 생활주 변폭력의 증가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치안영역이 등장함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422명(2019년 기준)에 달해 경찰 1명이 250~300명 정도를 담당하는 주요 선진국(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2015년 기준)의 치안서비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치안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써 관할지구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지원관계를 맺고 지역 방범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.

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약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어 예산 지원 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자율방범대를 읍·면·동 단위로 조직하여 "○○읍 자율방범대", "○○면 자율방범대", "○○동 자율방범대"로 부르기로 하되,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조직이 가능하도록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게 신고하도록 함. (안 제3조제1항, 제2항, 제4항).
- 나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에서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함. 다만 자율방범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며 자율방범대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함.(안 제4조제1항, 제2항).
- 다. 자율방범대원은 취약지역 범죄예방·순찰 및 현행법 체포·범죄 신고, 청소년 선도 및 보호, 미아·기아·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,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그 임무로 함(안 제5조).
- 라. 자율방범대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되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 치

안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소집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- 마.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,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,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,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,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. 특히 자율방범대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 거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(안 제9조, 제14조).
- 바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·훈련을 실시하며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수당을 지급할 수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사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 사항을 감독하되,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명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함(안 제11조).
- 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자율방범대, 연합대, 연합 회, 중앙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3조제1항).
- 자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을 소집할 경우 시·군·구의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 13조제2항).

차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·훈련 중 질병, 부상, 사망에 이를 경우 시·군·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(안 제13조제3항).

##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 단체인 자율방범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율방범대"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제3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- 2. "자율방범대원"이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자율방범대의 조직, 구성, 설립신고 등) ① 자율방범대는 읍·면· 동 단위로 1개 조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구·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조직도 가능하다.
  - ②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다.

- ③ 자율방범대는 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대장, 부대장, 총무 및 대원으로 구성하며 대장, 부대장은 대원들 가운데 호선하여 시 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- ④ 읍·면·동 단위로 조직·운영되는 자율방범대는 "〇〇읍 자율방범대", "〇〇면 자율방범대", "〇〇동 자율방범대"라 칭한다.
- 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·군·자치구 단위로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구성할 수 있고, 시·도 단위로 자율방 범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전국 단위로 자율방범대 중앙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자율방범대 연합대와 자율방범대 중앙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자율방범대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  - 1. 19세 미만인 사람
  - 2.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
 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- 5.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 하는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사람

- 6.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5호 가목 중 7)부터 9)까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는 사람
- 7.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
- 8.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임무)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취약지역 범죄예방 · 순찰,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신고
  - 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  - 3.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
  - 4.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  - 5.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
- 제6조(복장착용 등) ①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무 수행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 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-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순찰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,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자율방범대원의 근무 등) ① 자율방범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치안행정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범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.
- 제9조(행위의 금지)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
  - 2.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  - 3.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)
  - 4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  - 5.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- 제10조(교육 및 훈련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제5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후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 업무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포상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13조(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, 연합회,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·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.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8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지역 치안업무 보조로 소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수당

- 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- 1.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- 2.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- 3. 제11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- 제14조(벌칙) 제9조제3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자율방범대로 본다.